

2004년 「청소년특별회의」

개 회 식 순

▣ 일 시 : 2004년 12월 27일(월) 11:00~12: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2F)

- 개 회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추진경과보고 강대근 추진단장
 - 격려사 한완상 추진위원장
 - 축 사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 의장단 소개 진행자
 - 청소년특별회의 의사봉 전달 한완상 위원장→김갈미 의장
 - 개회사 김갈미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 2004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상정
 - 내빈소개
 - 폐 회
 - 기념사진 촬영
- *진행 :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꿈이 있는 사회! 도전하는 청소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



○ 2004.12.26-29
○ 서울교육문화회관

2004 『청소년특별회의』

【 자 료 】

1. 한국 청소년의 오늘, 그리고 희망 만들기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연구 보고서-
2. 팸플릿
3. 2004 청소년특별회의 선정 의제 5부

【 의제/안건 】

1. 청소년과 인권·참여
인권·참여 2004-1 '학생회'의 법제화
인권·참여 2004-2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인권·참여 2004-3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의 지속적 개최
2. 청소년과 교육
교육 2004-1 장기적인 교육정책 개선방안 마련
교육 2004-2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
3. 청소년과 보건·복지
보건복지 2004-1 장애 청소년의 권리 회복
보건복지 2004-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 2004-3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 마련
4. 청소년과 문화·여가
문화여가 2004-1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및 활동 프로그램 정보의 상시 제공
문화여가 2004-2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의 활성화
5. 청소년과 노동
노동 2004-1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노동 2004-2 청소년 고용시 노동법 준수

전체일정표

시 간	12/26(일)	12/27(월)	12/28(화)	12/29(수)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10:00		전시회 및 개막식 준비	휴 식	회의(6)폐회 *진행: 김갈외의장
10:00-11:00			회의(3) 한국 청소년의 삶과 문화 * 진행: 김갈외의장	
11:00-12:00		회의(1)개막식 *진행: 남부원국장		짐정리, 귀가준비
12:00-13:00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 오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14:00		회의준비	회의(4) 분과위원회 회의 * 진행 : 각분과위원장	귀 가
14:00-15:00			회의(2) 국무총리와의 만남	
15:00-16:00		이 동	회의(5)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진행: 이장형부의장	
16:00-17:00		이 동	휴 식	
17:00-18:00	참석청소년도착, 숙소배정		저녁식사	
18:00-19:00	저녁식사	대통령 초청 만찬	2004 청소년특별회의 개최기념 축하공연	
19:00-20:00	청소년특별회의 준비 진행:김갈외 의장	이 동		
20:00-21:00		○ 의제선정위원회 회의 ○ 결의안 준비 소위원회 회의		
21:00-22:00				
22:00-23:00				

세부일정표

D-1일 / 12월 26일 일요일		
시 간	내 용	
17:00-18:00	참석 청소년 도착, 숙소배정	
18:00-19:00	저녁식사	식 당
19:00-21:00	<p>청소년특별회의 안내</p> <p>청소년특별회의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 김갈외 의장 ○ 서기 : 김근희, 주희식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영의 말씀 -사랑의 카드쓰기 -전체회의(의제리뷰, 28일 회의 의사발언자 신청안내) 	가야금홀

제1일 / 12월 27일 월요일

08:00-09:00	아침식사	식당
09:00-11:00	○전시회 및 개막식 준비 ○회의준비	
11:00-12:00	<p>개회식 식전행사</p> <p>*진행 :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1절만 부르기) ○추진경과 영상보고 ○격려사 한완상 추진위원장 ○축사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청소년특별회의 의사봉 전달 -한완상 위원장→김갈외 의장 ○개회사 김갈외 의장 -의장단 소개 -개회사 ○2004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상정 ○기념사진 촬영 	가야금홀
12:00-13:30	문화관광부 장관초청 환영오찬	거문고C홀
13:30-15:00	회의준비	
15:00-16:00	<p>회의(2) 국무총리와의 만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경과 영상보고(5분) ○인사말/의장(5분) ○국무총리 인사 말씀(5분) ○청소년과 국무총리와의 대화(40분) ○국무총리 마무리 말씀(5분) 	가야금홀
16:00~18:30	이동	
18:30-20:00	대통령 초청 만찬	청와대
20:00~21:30	이동	
21:30-22:30	○의제선정위원회 회의	가야금홀

제2일 / 12월 28일 화요일		
08:00-09:00	아침식사	식 당
09:00-09:30	휴 식	
09:30-12:00	회의(3) 한국 청소년의 삶과 문화 ○진행 : 김갈외 의장 ○서기 : 김효비, 이태우	가야금B홀
12:00-13:00	점심식사	식 당
13:00-15:00	회의(4) 분과위원회 회의 -청소년과 인권·참여분과(아카시아) -청소년과 교육분과(코스모스) -청소년과 문화·여가분과(카네이션) -청소년과 보건·복지분과(튤립) -청소년과 노동(라일락)	5개 소회의실
15:00-15:30	휴 식	
15:30-18:00	회의(5) 청소년 인권과 참여 ○진행 : 이장형 부의장 ○서기 : 김근희, 이태우	가야금B홀
18:00-19:00	저녁식사	식 당
19:00-21:00	2004 청소년특별회의 개최기념 축하공연	가야금B홀
제3일 / 12월 29일 수요일		
08:00-09:00	아침식사	식당
09:00-11:00	회의(6) 폐회 ○진행 : 김갈외 의장 ○서기 : 박엄지, 이태우 ○2004 청소년특별회의 결의문 채택 ○감사의 말씀 ○폐회	가야금B홀
11:00-12:00	○평가 및 정리	
12:00-13:00	점심식사	식 당
13:00-	귀 가	

2004 청소년특별회의 선정 의제 - 청소년과 인권·참여 -

【 의 제 】

인권·참여 2004-1 '학생회'의 법제화

인권·참여 2004-2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인권·참여 2004-3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의 지속적 개최

■ 분과 위원장 : 지 은 선

■ 분 과 위 원 : 박엄지(서기), 강찬우,

강현정, 구태희, 김경민, 김미옥, 김민지,

김주연, 김성웅, 김혜정, 남화성, 박보현,

박호연, 성상현, 신기철, 심성민, 오현진,

윤지혜, 이 길, 이선미, 이영민, 이용철,

이윤석, 이지연, 정하빈, 최 연 (27명)

▣ 청소년과 인권·참여

1. '학생회'의 법제화

- 학생회 법제화로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학생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상적 자치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학생 인권 및 권익과 관련하여 학내 전반적인 문제에 학생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 청소년 스스로 교육주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육에 대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음.
- 학생회 활동을 참다운 학생 자치활동으로 자리매김하며, 진정한 학교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 현황과 문제점

- '학생회'의 여건상의 문제
 - 학생회칙의 문제
 - 학생회칙의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공고한 기본 틀에 학교 명칭만 바꾸어 사용하거나 너무 간단하게 차용해서 쓰고 있다.
 -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에 규제와 통제가 너무 많다. 전국중고등학생 연합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조사한 결과, 224개 중 107개(51.2%)

학교의 학생회칙과 교칙은 공통적으로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고 명시, 교내·외의 정치적 활동을 금하고 있으며,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요구권을 박탈하고 있다.

- 학생회 예산상의 문제

- 학생회에 편성된 독립적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동비용에 있어서 학내 일반 동아리보다 지원 상황이 열악하거나 예산을 얻기 위해 학교에 승인을 받고자하면 학교에서 거부하는 일이 많으며, 학부모나 대의원의 사비로 충당하여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

- ‘학생회’의 기본적 여건의 부재

- 학생회의 전반적 시설인 학생회실 및 기타 준비실 등이 미비하다.
- 불법 야간자율학습 및 0교시 등으로 인한 자율적 활동시간이 부족하다.
- 정기적인 회의 개최가 불가능함에 따라 구성원들의 책임감과 소속감도 약해지며 이에 따라 활동이 미비하게 된다.

○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 기본적 민주주의식의 부재

- 자치교육을 실행하거나 학내에서 교내선거를 실시하기 전 사전교육이 미비하다. 구색맞추기식의 성의 없는 진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민주적 의식함양이 바로서지 못하여 절차나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 학생회 회장단 선거상에서의 문제

-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간선제, 임명제로 학생회장단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입후보 자격을 성적순으로 매기는 등 학생의 자질과 리더십을 키워주기 보다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학생회를 선택하고 있다.
- 선거과정에서의 부정 및 비리 선거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 학생회 조직 및 구성의 문제

-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된 간부진) 구성을 주로 학생회장에게 자율적으로 맡겨,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구성이 아닌 교사나 학생회장, 부회장의 임의권한으로 학생회장의 측근(함께 유세를 다녔던 친한 친구 등)으로 간부진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런 일이 발생하면 “자기들끼리의 학생회”가 되어버려 학생들에게 소외당하는 학생회가 되기 쉽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조적 모순

- 학교자치를 일컬으면서 학생들을 배제한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 유지, 인사…”를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 교육의 3대 주체 중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자신들이 받을 교육에 대한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다는 것은 최고의 모순이며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배제시키는 것과 같다.
-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의 중대한 사항 대부분(초중등 교육법 제 2절 32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학교의 입장은 학생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오히려 중대한 사항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욱더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결국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효율적인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 대안 및 개선 방안

○ ‘학생회’ 법제도 마련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학생회의 설립을 보장한다.
- 학생회의 독립적 예산 편성, 입후보 자격, 선거방법, 학생회의 권한 등 학생회의 설립과 활동여건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조항을 명시한다.
-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치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보장

- 관련교육법 개정 및 학생참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 학생대표의 자격 명시예
 - 학생회장 : 전체 재학생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 혹은 선출된 대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제 2절 58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근거하

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중 참가 학생대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中 2인 이상
 -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中 3인 이상
 -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中 4인 이상
- 기타 교육법 개정 및 참여보장을 위한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학생대표의 의결권 및 발언권의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보장과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사권 존재

2.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조정

- 참여권이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이러한 참여권은 민주사회 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부여되며, 그 적용에서 정도나 차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청소년들도 한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일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
- 세계적 동향과 추이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신적 성장능력에 맞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각각 18세와 20세로 하향 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필요가 있음.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21세로 시작하여 1960년 20세로 낮춰진 이후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20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이 성숙함에 따라 선거연령을 하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청소년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만 18세 선거권을 주장하고 있다.
- 전국 중·고등학생 1,247명을 대상으로 한 2003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만 18세(29.7%)가 선거권 연령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보았으며, 만 20세(21.9%), 19세(18.2%), 만 17세(16.7%), 만 16세(13.5%)로 전체적으로는 만 18세 이하가 적당하다는 청소년은 59.9%, 만 19세 이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78.1%로 나타났다.

- 만 18세 청소년 중 고등학생 비율이 10%대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 청소년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리는 청소년들이 성인들에 비해서 합리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미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올바른 선택이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로 집중되고 있으나, 이를 반증하는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면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성인으로서 노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남자는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20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청소년의 법률상 의무사항

관련 법률	내 용
근로기준법	-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51조)
병역법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만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제8조 1항)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6조 1항) -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은 육군, 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채용할 수 있다"(제20조 1항)
민법	-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한 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
고용직공무원규정	- "1종 및 2종, 고용직 공무원은 18세 이상 45세까지……."(제3조 3항 1호) - "18세 이상만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8, 9급 공무원이나 기능직 7, 8급 공무원이 될 수 있음"(공무원임용 및 시행규칙 제3조)
도로교통법	-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자는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다"(제70조 1항 1호)

○ 각 국가별 선거권 현황

- 선거권 부여현황 (2004,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자료)

연령	국 가 명	국가수
16세	니카라과, 쿠바, 브라질(임의적)	3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이란, 수단	4
18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중국, 호주, 브라질(의무), 뉴질랜드 등	143
20세	한국, 일본, 모로코, 나우루, 카메룬, 튀니지, 리히텐슈타인	7
21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레바논, 통가, 모나코, 사모아, 피지, 몰디브, 아제르바이잔	10
		총 167 개

- 피선거권 부여 연령(하원의원선거 기준)

연 령	국 가 명	국가수
18세	캐나다, 호주, 스페인, 헝가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9
21세	싱가포르, 러시아, 룩셈부르크, 영국, 브라질(하원), 이스라엘, 폴란드,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니카라과, 멕시코	11
23세	프랑스	1
25세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이탈리아(하원), 파키스탄, 네덜란드, 그리스, 콜롬비아(하원)	9
30세	미국(상원), 일본(참의원), 쿠웨이트	3
35세	브라질(상원), 프랑스(상원)	2
40세	이탈리아(상원)	1
		총 36 개

○ 선거권 관련 논의

- 제16대 대통령선거 공약

-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게 만 18세로 낮추겠습니다.”라고 공약하였다.
- 정몽준(국민통합21) 대통령후보,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도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할 것을 주장하였다.

- 청소년관련단체 및 정부부처의 움직임

- 청소년단체협의회 및 62개 회원단체 공동명의로 청와대, 국회, 정당, 중앙선관위 등에 “선거연령 18세 보장” 요청 공문('03. 8.)을 보냈다.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령 19세 인하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안 제시('03. 7.)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2000헌 마111)

- 선거권 연령을 몇 세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함으로 선거연령에 관한 입법형성권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 2004년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결성 및 활동 전개

- 2004년 10월 29일까지 만 18세 선거권 지지 국회의원은 122명이며, 선거연령에 대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만 18세, 한나라당은 만 19세 선거권이 당론이다.

○ 주요 문제점

- 의무와 권리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 의무는 만 18세이며 권리는 만 20세라는 점이다.

□ 대책 및 개선방안

○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화

-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중 제 15조에 규정된 선거권 규정인 만 20세를 세계적 추세와 청소년들의 의식 성장을 근거로 만 18세로 개정한다.

○ 피선거연령 만 20세로 하향화

-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중 제 16조에 규정된 대통령 피선거권이외의 피선거권을 세계적 추세와 청소년들의 의식 성장을 근거로 만 20세로 개정하며 대통령 피선거권은 추가논의 후 필요시 개정한다.

○ 민법개정안

- 많은 국가적 사건을 통해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의식성장을 하였음이 입증되었다. 즉 성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근거로 민법 개정안 중 성년 기준인 만 19세와 굳이 맞출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선거권 교육

- 초·중·고 교육과정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3.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의 지속적 개최

-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특별회의’ 같은 참여 장치를 마련하여 대통령이 함께 청소년들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제도화 하고 있음.
- 매년 개최되게 될 ‘청소년특별회의’의 의제들에 대해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함께 한다면 그에 따른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질 수 있음.
- 청소년 관련 업무에 있어서 행정부서간의 원활한 업무조정 기능으로서 일관되고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추진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참여의 극대화 및 법제화가 50%이상 나왔고, 대통령과 청소년 관련 분야 이해 및 당사자들 간의 대화 통로 개설(14%), 전국적인 적극적 여론 수렴의 노력(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들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고, 청소년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넘어서 청소년계 전반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 대통령이 함께 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청소년특별회의 모델
 - 미국 : 청소년 백악관회의
 - 독일 :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 필리핀 : 대통령 직속 국가청소년위원회
 - 남아프리카공화국 : 공화국의 국가 청소년위원회
 - 대만 : 행정원청년보도위원회 등

- 법의 제정에 있어서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통령이 함께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며,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 법 제정시까지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가 아니며, 또한 법적으로도 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 대안 및 개선방안

- 대통령이 함께하는 청소년특별회의 매년 개최
 - 미국, 대만,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청소년들과 함께 그들의 인권과 복지,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고 있다.
 - 범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청소년 관련 문제들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살핀다면 그 만큼 더 원활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 청소년특별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한 예산 확대
 -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제들을 모아 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고, 그 과정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자리들이 많이 필요하였다.
 - 이에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 2004년 6개월간 시행된 청소년특별회의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으므로 내년부터는 1년동안 지속적인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청소년특별회의 사무국의 상설화
 - 매년 개최될 ‘청소년특별회의’에 관한 모든 정보의 유지와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설화된 사무국이 운영되어야 한다.
- 체계적인 홍보 활동 필요
 - 지난 6개월간 시행된 청소년특별회의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체계적인 홍보가 시급했다.
 -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TV, 인터넷,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 ‘청소년특별회의’의 평가 및 운영

- 12월에 ‘청소년특별회의’ 진행, 1월과 2월에는 평가회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평가는 정확하게 시행하고 그 내용은 다음 해에 반영한다.
- 채택된 의제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지역단위의 청소년 의제 선정 활동을 위해 시, 시·도지사 및 교육청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청소년특별회의’가 타 청소년기관 및 단체의 성격과 함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

2004 청소년특별회의 선정 의제 - 청소년과 교육 -

【 의 제 】

교육 2004-1 장기적인 교육정책 개선방안 마련

교육 2004-2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

■ 분과 위원장 : 강 의 석

■ 분 과 위 원 : 주희식(서기), 김민경,

김이민경, 김성규, 김준용, 김준형, 김지연,

김태양, 김하람, 박상열, 박준우, 박창성,

박초롱, 석영관, 송혜정, 안귀령, 유은별,

유하나, 이영석, 정호진, 조수환, 조완영,

차경수, 최순희, 최아름, 하채연, 황예슬 (28명)

■ 청소년과 교육

1. 장기적인 교육정책 개선방안 마련

- 최근 대입제도는 수학능력고사 부정 행위, 2008년 수능 9등급제, 고교등급제 파동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과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 창출이 시급함.
- 대입제도는 현재 연간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동인(motive)이 되고 있으며,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교등급제 파문 이후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대입제도를 둘러싼 교육의 문제는 수시모집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전형의 확대, 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혁 등 초기 기반의 조건인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시점임.

□ 현황과 문제점

- 대입제도는 현재 한 줄 세우기 입시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시모집, 학생부 비중 늘리기 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대입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초중고 교육과정의 개혁 없이 이루어진 조치로써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 대입제도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전형의 요소(학생생활기록, 내신 등) 보다는 선발기제인 수능에서 당락이 좌우되고, 어떤 경우 전형의 요소(경시대회 수상 경력 등)가 단순화 되어있으므로 소모적 무한 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 지금 체제에서 3不제도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한다고 해도 대학서열화로 인한 대학의 전형 및 선발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수능과 내신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일류대학의 성적 우수 학생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의 폐해는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서열화의 해소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의 변화도 함께 모색하는 종합적인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중간·기말고사는 현재 100점 만점 내신제로 교사의 평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국가가 100분률로 교사에게 평가범위를 정해주는 제도, OECD국가 중에 이런 경우는 드물다), 이 정형화된 시험지를 매개로 하여 사교육의 시장이 형성되고 대학서열화의 배경이 만들어진다.
- 현재의 EBS 수능 전문 강의는 수능의 난이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으나, 학교교육의 획일화와 교육방송의 입시기관화라는 부작용을 빚으며 교육시민단체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다. 수많은 재학생 수험생들이 획일적 지식교육 환경에 중독이 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해 학교에서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2008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현재의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써 또 다른 국가주의의 연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본질적인 개혁이 없이 수능과 내신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

□ 대안 및 개선 방안

- 초·중·고 교육과 대학입시를 전면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입시가 교육을 종속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입시를 위해 초·중고에서 획일화된 평가를 강요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초·중고 교육평가를 입시와 분리, 대학은 독자적인 전형방식을 개발하여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전형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실현가능한 분리를 제안하도록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평가는 교육활동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교과나 지역, 교사 등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은 건강한 생활교육과 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재능을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대학입학 인원은 확대하되 진급과 졸업을 엄격하게 하여, 고등교육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2007년부터 수능을 자격고사로 하고 복수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수시모집을 통해 입시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이의 기반 조성을 위해 100분률 내신제를 폐지하고 종합 서술식,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등 평가방식을 OECD국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 2006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교과를 수능에서 제외시켜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수능에서 수학과 국어는 영역별로 선택과목화 해야 한다. 일본 등에서도 입시와 내신에서 영어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현안 교육시책 연구기능을 위주로 하는 현재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의 기능을 통합 재조정하여 기초교육연구기관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입시제도와 민주적인 학교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입시정보센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 대학교육협의회에 전문적인 대학입시 안내의 기능을 도입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진학의 자료를 제공하여 실질적

인 대학진학의 매개체가 되도록 한다.

-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미용고, 애니메이션고, 컵테일고 등)가 필요하다. 국영수 등 주지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보건교과 신설, 인권 환경교육의 확대 등 학교 구성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 전문대를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내실화를 기하며 4년제로 개편하여 일반대학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졸업 후 전문가 과정(대학원) 설치가 필요하다.

2. 교육내용의 다양성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

- 학교는 사회적응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특별활동인 비교과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기능을 해야 함.
- 선택과목의 다양화와 자율적인 교과 선택권의 부여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학업 참여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음.
- 교사평가제의 시행은 학생과 교사간의 피드백 작용을 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특별활동 시수는 총 12단위로 배당되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도모되고 있으나, 학교의 입시 위주 교과운영과 교사의 업무부담, 특별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및 시설과 기자재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7차 교육과정의 학교시스템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대학입시를 위한 과목의 선택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업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 일부 교사들의 언어폭력과 체벌 및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신에 대해 제재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 대안 및 개선 방안

- 성(性)·인권(人權)·노동(勞動)·자기적성교육(自己適性教育) 등의 실질적

비교과수업과 관련된 특강 설치를 졸업요건과 학교인가요건으로 제정한다.

-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EBS TV·인터넷교육방송을 통한 원격교육, 청소년기관 주최의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교과 외에 부가적으로 특별활동 지도를 위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사회 수련시설이나 단체 등에서는 인근의 각급 학교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교원이나 퇴임 교원의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 경직된 교육과정 정책의 유연화가 요구된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관료의 독점시스템을 민간 요구 개방제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교과 편수기능은 지역과 단위학교로 이관하고, 국민공통 교과를 재조정하여 국가가 필수로 지정하는 범위를 최소화 한다.
- 학년별 필수 및 선택교과의 집중이수제가 필요하며, 국민적 요구 및 학생친화적인 교과 즉 보건교과, 환경교과 등을 도입·확대하여 교과서 공급체계의 개방, 교과교실의 확보, 교원수급 등 제반여건의 조성을 마련해야 한다.
- 교사가 독단적인 교육방식으로 수업을 관장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수용을 전제로 하는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평가하고 건의할 수 있는 평가제를 실시한다.

2004 청소년특별회의 선정 의제 - 청소년과 보건·복지 -

【 의 제 】

보건복지 2004-1 장애 청소년의 권리 회복

보건복지 2004-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 2004-3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 마련

■ 분과 위원장 : 김 진

■ 분 과 위 원 : 김호비(서기), 강해경,
김원영, 고선영, 김지희, 박병구, 박지희,
윤빛나, 송병기, 신준철, 이기우, 이봉연,
이영수 (14명)

■ 청소년과 보건·복지

1. 장애 청소년의 권리 회복

- 현재 장애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을 제한당하거나 박탈당한 상태이다.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인데,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 취해야 할 기본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실은 불합리한 것이고 또한 비인간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회복은 시급한 당위성을 지닌다.
- 장애 청소년들의 이동권 박탈로 인한 사회참여 기회상실 또한 심각하다. 이동권은 생존권과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원활한 참여 역시 어려우며, 참여의 기회까지 제한되거나 상실된다면 장애인의 생존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므로 이동권과 사회 참여권의 회복 역시 시급하다.

□ 현황과 문제점

- 53.3%의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이고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장애인 실태조사')있으며, 학령기 장애인 24만명 중 75%가 교육기관 없이 가정이나 보호시설에 방치되어 있다. (2003년 장애인 교육권연대 발표)
- 장애청소년의 경우 일반 학교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전·입학을 거절당한 비율이 전체 장애청소년 중 30%나 되며(2003년 9월 이미경 국

회의원, 장애인교육권연대 조사), 장애 청소년을 수용할 양질의 교육기관과 학습 보조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장애청소년은 자연히 교육장에서 소외되고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이다.
- 이것은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애인들에게 박탈되거나 매우 제한된 것으로,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 교사의 자질 및 인식 부족,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강동구 A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B(12)군은 학년부장교사로부터 또래 학년의 마땅한 수련회 참여를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그 과정에서 운동장에 나와 있던 전 교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으며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였다.
- 경북 포항 C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D(8)군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 담임교사가 체육시간에 수업을 하러 나가면서 교실 문을 잠가 버린 것. D군은 갑자기 용변이 급했지만 교실 문이 잠겨 나갈 수 없었다. 더구나 이 학교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흔한 일이었다.

(2004. 7. 15 이효용 기자, 서울신문)

- 장애 청소년들의 이동권 박탈로 인한 사회 참여 기회가 상실된다.
 - 장애인들의 이동권 박탈현실은 심각하며, 이는 곧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담당기관은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철저한 관리, 감사도 소홀한 실정이다. 일례로 중앙청소년수련원조차도 휠체어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국제회의장에서도 휠체어를 탄 장애 청소년이 이동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공공기관 및 장소가 허다하며, 편의시설의 수요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각 장애인들은 버스를 포함하여 번호를 구분해야 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3~'07)의 계획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장애인 보건·복지 대안을 대통령과 각 부처를 포함한 정부에 제안한다.

□ 대안 및 개선방안

- 법으로 보장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한다.
-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는 정부 대표, 장애별 장애 청소년 대표, 보건복지 전문가, 민간 청소년 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 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제시한 장애 청소년들의 권리 박탈 문제는 근본적으로 장애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 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아래와 같이 주어지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이동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도록 한다.
 - 첫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 고찰 및 정책 기준을 마련한다.
 - 현재 장애 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집행이다. 장애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누구보다 전문적인 사람은 장애인들의 고충과 당면한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장애인 본인이다. 당사자를 제외한 체 이루어졌던 기존의 정책 집행은 효과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는 장애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 고찰 및 수정, 필요한 추가 정책을 제안 할 수 있는 힘(법적 효력)을 가지며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의 의견은 장애청소년 정책의 전반적 기준이 된다.
 - 둘째, 장애청소년을 위한 사회 편의시설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 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제시했듯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조차도 장애 청소년의 이동권과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실하다. 이는 비단 그 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편의시설의 문제이며, 이것은 장애 편의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사권을 가지며, 편의시설의 관리 및 유지가 부실한 곳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제제가 내려져야 한다.
- 셋째,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는 장애청소년 복지 정책의 예산 집행 과정의 감사권을 가진다.
 - 실제로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와 감사가 소홀하다. 그러므로 철저하고 정의로운 예산 집행을 위해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는 장애 복지 정책의 예산 집행 과정의 감사권을 지니며 이 과정 중 예산 집행 불법 사례는 정부에 보고 되며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제가 뒤따라야 한다.
- 넷째,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는 장애청소년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기능을 지닌다.
 -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애청소년들의 당사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기존까지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장애인 단체의 여론 수렴 기능이 미비 했으며,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장애 문제 감사위원회」는 폭넓은 장애청소년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 ‘탈학교’는 개인적 부적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학교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빚는 현상으로도 읽을 수 있고, 제도적 장치 없는 청소년들의 범죄율은 일반 청소년 보다 10배 이상 기록되고 있음.
- 탈학교 청소년을 ‘사회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안정적 자아를 되찾을 수 있는 학습공간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과 위상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학교를 그만둔 십대의 수는 중학생 17,338명, 고등학생 48,706명 등 전체 6만 6천 4십 6명에 이른다. 일년 동안 자퇴한 숫자가 그 정도이니 누적된 숫자는 엄청나다. 이런 사실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많지 않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 방식
 - 학업능력 : 탈학교를 다니는 대다수 청소년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도태’되는 경우이다. 학교 공부를 스스로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수험 경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선행학습의 열풍에 따라 학습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학업 성적만이 거의 유일한 삶의 목표로 여겨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교사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 가정적 배경 :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은 여러 지표들을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다.
 - 정신적 장애 : 학교 공부나 학교생활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는

청소년들 가운데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기에는 왕따 등의 이유로 생겨나는 심리적인 상처를 갖게 된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곤경과 소외

-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 :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은 불안함과 막막함이다.
- 문화적 차별(열등하고 불온한 비정상) : '중퇴생 = 문제아'라는 등식은 아직도 뿌리 깊게 만연해 있다. '청소년 = 학생'이라는 등식이 확고하게 공유되는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존재는 '비정상'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 제도적 차별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는 '신분증' 부재이다. 신분증이 없어서 그 또래의 학생들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신분을 규정하고 보증하는 것은 바로 학생증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어야 한다. 우선 학생증을 제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은행 통장 개설, 도서 대출증도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

□ 대안 및 개선 방안

○ 청소년증의 실질적 보장

- 청소년 카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신청한 청소년들이 너무나 적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 받고 있다. 학생증 위주의 십대 신분 보장 시스템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지도가 못하는 것이다. 학생이든 아니든 일정한 연령의 모든 청소년에게 편의와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 도시형 대안학교 및 다양한 학습 공간 설립 확대

-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학교가 아닌 자신이 집에서 통학을 하며 특기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시형 대안학교 및 다양한 학습 공간을 크게 늘려야 한다.

○ 현 실정에 맞는 점진적인 학력인정

-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학력 인정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방안1: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에 학점을 부여해 학점은행제로 연결한다.
 - 방안2: 커리큘럼 및 평가 방안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정학교로 허가한다.
 - 방안3: 일반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일정 기간(1-2년) 위탁교육을 받은 다음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도록 한다.
- 정부, 학교, 학생이 공감 할 수 있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 점진적인 학력인정안을 진행시킨다.

○ 경제적 지원

- 부의 양극화 속에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교육이 그 핵심 고리로서 부각되는 현실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그 구조의 전형적인 피해자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가정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안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포기해야 하는 청소년도 많다. 삶의 조건이 학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 활동주체 지원

- 교육사업에서 시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인력이다. 여러 활동주체들(대안학교 교사, 자원 활동가, 청소년지도자 등)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삶에 깊이 개입하고 이해하면서 교육적 성장 과정을 함께 이끌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몇 년간의 활동으로 힘을 소진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사회의 소중한 교육 자원을 잃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이러한 활동주체들 역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반 마련은 일정 수준의 급여 보장 등 개별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주체들이 확보될 때 우선적으로 학습 공간의 운영 기반이 안정화 되는 일이다.

○ 다양한 네트워크의 확장

- 기존 학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들은 규모가 작다. 소규모에서 비롯되는 한계가 발생한다. 개별 학교의 장벽을 넘어 연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비슷한 학교들과의 네트워크
 - 학교와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 연계를 맺는 일
 -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

○ 직업 체험으로서의 인턴십

- 취업이나 아르바이트의 단순한 알선이 아니라 직업 탐색 프로그램이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조직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일의 경험을 통해 산업과 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그들의 단기적 요구의 충족보단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학습 공간의 구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자원(프로그램, 공간 등), 인적자원(전문가, 활동가 등), 재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각종 평생학습 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각각의 역할 분담 방식을 들 수 있다.

○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예)



3.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 마련

- 사회주의·공산주의적 혁명인간을 키우려는 획일화된 북한사회에서 태어나 자라 온 탈북청소년들이 다양성이 보장된 대한민국사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의미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음.
- 탈북청소년들의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탈북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대안학교와 교육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탈북청소년

- 북한에서의 청소년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 들게 되었다.' 96 ~ ' 99년 동안 추정컨대 30만에 가까운 탈북자가 발생했다. 가족과 함께 떠난 탈북청소년, 홀로 떠난 청소년(꽃제비: 식량난으로 인한 가출청소년)들이 생존의 권리를 찾아 대거 제3국(중국, 러시아, 몽골, 태국, 라오스 등)으로 나오게 되었다.

○ 제 3국에서의 탈북 청소년들의 삶

- 난민 신분인 탈북자 및 탈북청소년들은 제 3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도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에서 탈북자(탈북청소년)들을 색출, 북송시키면서 생존의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을 떠나 한국입국까지 평균 3.5년이라는 시간(길게는 7~8년, 짧게는 1.5년)이 소요된다.

○ 한국 입국 후 탈북청소년들의 삶

- 2000년 이후 탈북 청소년들의 한국입국이 증가하였고, 1999년 7월부터 올 9월까지 입국한 탈북 청소년은 모두 791명으로 전체 탈북자의

19% 가량이며, 이 가운데 부모가 없는 무연고 청소년은 156명에 이른다(한겨레 12월 10일자).

- 현 탈북청소년들의 한국 정규교육 취학률은 초등학교 취학률 85.7%, 중학교 취학률 49%, 고등학교에 진학할 연령인 16살부터 20살까지의 탈북 청소년 411명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27명으로 6.6%에 불과하다(한겨레 12월 10일자).
- 고등학교 진학 및 편입을 포기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중이며, 학업을 포기하고 취직하여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고등학교를 포기하는 이유

- 탈북청소년들의 특성
 - 북한 사회의 특성과 남한사회의 차이다. 극도로 폐쇄되고 획일화된 북한사회에서 북한 이외의 세상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새롭게 배워야 하는 실정은 문화적 신생아와 같다.
 - 한국입국까지의 심적·정신적 상처의 영향이다.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북한과 제 3국에서의 최악의 생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심신의 외상과 스트레스를 입고 상처의 정신적·심적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없는 상태이다.
 - 자아의 혼란이다. 북한사회에서의 개인은 수령이 지시하는 곳에서 충성만 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나 자신을 위한 개인은 존재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다양성과 자아에 대한 개념은 탈북 자유 이주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 또한 사춘기(북한과 중국에서는 생존의 위협으로 인해 사춘기를 겪을 수 없었고, 생존의 위협이 제거된 이곳에서 모든 정신적 발달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와 겹쳐 탈북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한국의 청소년들의 겪는 방황과 혼란에 남북한의 경계 상황과 북한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과거의 상처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경우 북한의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 교육제도의 다름

-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교육과괴 현상과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로 인하여 교육 공백이 긴 탈북 학생들은 남한의 교육현장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 공백으로 인해 또래보다 3-4년 낮게 편제되지만 학력은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교육 내용과 그 방법이 북한과 상이하며 일부 과목은 체제유지를 위해 왜곡시킨 것이 많아 학교 현장에서 남한의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 획일화된 공교육 중심의 북한에서 교육받던 탈북 청소년들이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남한의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사교육을 받을 만한 형편도 되지 못한다.
- 북한의 10년제 교육 체계(소학교 4년, 고등중학교(중등+고등) 6년): 만 7세에 소학교에 입학하고, 만 17세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교육제는 한국 12년제 교육제와 비교할 때 2년이나 짧다. 이것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이 탈북 청소년들에게 더욱 혼란스럽다.
-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교육의 내용과 과정이 김일성주석, 김정일위원장의 이상화에 대한 것이다. 북한 체제의 최고의 지식인 김일성 이상화를 위한 내용들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식이 한국 및 자유세계에서는 무용한 것임을 알았을 때 당혹감, 허무감, 자괴감,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잃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려 하고 일부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을 표현해야 할 경우, 중국조선족 유학생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 한국사회의 탈북자·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재 : 한국사회는 탈북자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소외 계층이나 부양 대상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부분만 극대화시켜 편견이 심하다. 통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이들을 한국사회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에 대한 배려와 투자는 복지가 아닌 통일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들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방법이 모색될 때 그것이 바로 통일의 과정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2004 청소년특별회의 선정 의제 - 청소년과 문화·여가 -

【 의 제 】

문화여가 2004-1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및 활동 프로그램 정보의 상시 제공
문화여가 2004-2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의 활성화

■ 분과 위원장 : 홍 석 용

■ 분 과 위 원 : 김근희(서기), 기연희,
김민재, 김서현, 고승재, 김선화, 김현우,
남진아, 명현화, 박성배, 백은경, 윤효민,
이재경, 전경배, 정재윤, 정지혜 (17명)

▣ 청소년과 문화·여가

1.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및 활동 프로그램 정보의 상시 제공

- 21세기 지식정보화 및 문화의 시대는 창의적 리더십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고급 지식 정보의 축적으로만 이룰 수 없음.
-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설 및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
-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실제 생활시간을 고려하여 방과 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현황과 문제점

- 2005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지역사회 내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등의 개방을 확대하여 견학활동, 1일 체험, 청소년 문화학교 운영 등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유도하려는 계획이 있어 매우 고무적이나 보다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현실로 인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문화·여가시설을 낮 시간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워 그 이용도가 매우 낮으며 또한 확보된 시설도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저조하다.

- 특히 청소년 문화 및 여가시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그 인지도 또한 매우 낮다. 더구나 대부분의 시설이 이미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 대안 및 개선방안

- 청소년문화시설 확충 및 활동 프로그램 정보의 상시 제공
 - 폐교를 이용한 자연캠핑장 조성 : 문화·여가시설의 부족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자연체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폐교한 학교들을 자연캠핑장으로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 켈쳐버스 운행 : 대부분의 청소년 문화시설이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보다 쉽게 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켈쳐버스 제도를 도입한다. '켈쳐버스'란 청소년 문화시설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셔틀버스로서, 기존 문화시설이용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 지역관청을 이용한 문화·여가시설 마련과 운영 : 청소년들의 수요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적은 바, 각 지역에 있는 시청, 면·동사무소 등의 관청 회의실을 일정시간 청소년 토론실 또는 강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고려한 시설 운영 : 현재 청소년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이 실수요자인 청소년이 생활패턴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문화체험 활동 '최소이수시간제' 도입 : 現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청소년문화체험 활동 '최소이수시간제'를 도입한다. '최소이수시간제'란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학교제도 안에서 의무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학교 적응활동, 특기적성교육 시간의 정상화 : 학교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기존의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특별활동 및 창의적 재량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시간들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전문 홍보 담당과를 신설 : 정부차원의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위해 문화관광부에 홍보과를 신설한다.
신설될 담당부처에서는 적극적인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와 청소년의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보장한다.

2.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의 활성화

-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축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직업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경험의 장 마련.
- 입시위주 교육의 일상 속에서 억눌린 청소년들의 욕구를 축제를 통하여 발산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현황과 문제점

- 지금까지의 청소년축제 결과를 보면 준비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보다는 부분적 참여 혹은 관람자의 역할이 더 컸다. 따라서 성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과 연출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현재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는 대부분 댄스경연과 가요, 영화부문에만 국한되어 청소년축제의 본질과 내용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새로운 청소년축제에서는 실질적 참가자인 청소년들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 이외에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축제가 되어야 한다.

□ 대안 및 개선방안

- 청소년의 의사결정권 보장
 - 청소년 문화축제의 기획이나 진행에서부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의사결정권을 법제화해 청소년의 주체성을 살려 창의적 청소년 문화를 형성한다.

○ Youth Zone을 통한 청소년만의 축제 조성

- 청소년 문화공간인 Youth Zone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연을 활발히 한다. 청소년 동아리나 개인에게 공연,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할 것이다.

○ 청소년 활동 관련 공문의 실제적인 권리 부여

- 청소년 활동이나 축제를 위해서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면 미처 학생들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폐기처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관련 공문이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004 청소년특별회의 선정 의제 - 청소년과 노동 -

【 의 제 】

노동 2004-1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노동 2004-2 청소년 고용시 노동법 준수

■ 분과 위원장 : 박 은 영

■ 분 과 위 원 : 이태우(서기), 김정애,
김현성, 노정균, 엄진하, 윤영현, 이푸른,
조기찬 (9명)

■ 청소년과 노동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

-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
- 청소년이 지금 하고 있는 노동활동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함은 물론, 현재 청소년들이 일하는 현장 곳곳에서 인권 침해 및 노동탄압 등 노동자 청소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현황과 문제점

- 노동부가 2003년 12월 발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3만 6,825명 가운데 22.1%인 7,969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2.4%인 193명이 다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전국 중고등학생의 수(2002년 말 현재 366만 3,612명)로 환산하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수는 79만 명에 육박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들 중 74.7%는 자신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향후 직업 선택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하여 아르바이트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안 및 개선방안

-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창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실시
 - 지방자치단체, 교육인적자원부 및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통해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람을 얻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중개
 -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청소년들에게 공식적으로 중개해 줄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 지역사회 단위에서 구인·구직의 공식화된 창구의 개설은 청소년에게 마찰적 실업을 줄여주고, 적성을 고려한 업종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의 권익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확대
 - 청소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 체험을 실시하여 하도록 한다.
 - 직업체험과 이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교육의 질적 문제와 노동력 착취에 따른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 교칙 개정
 - 대부분의 학교 교칙을 조사해보면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예를 들어 방학 때 나누어주는 안내문을 읽어보면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담임선생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 교칙이 먼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고용시 노동법 준수

- 사회적으로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권리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음.
-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
- 최저임금보장과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은 노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들이 명시된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준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것이며, 이 대상은 어느 대상이나 마찬가지로 임

□ 현황과 문제점

- 청소년들은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해지 단계까지 △근로계약서 미체결 △취직인허증 미발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 야간, 휴일수당 미지급 △산업재해 미보상 △폭언, 폭행 △성희롱 △부당해고 등의 다양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당한 노동권 침해 유형 가운데 근로시간의 과다가 20.8%로 가장 높았으며, 약정 임금 미달이나 최저임금위반(14.2%), 임금체불(7.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휴일수당 미지급과 불법야간노동이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 노동부가 2004년 7월 롯데리아, KFC 등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대상으로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모두 1만 4,053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휴일수당이나 연장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21억 7,000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취직인허증을 발부받지 않고 인가 없이 야간노동 등을 강요한 사례도 4265건이나 적발되었다.(한겨레, 2004. 8.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소년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부당처우를 그냥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노동부는 방학기간동안 대형 업체들을 위주로 단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뿐, 청소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주유소, 피시방,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당국의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단순한 시정 지시 수준에 그칠 뿐 사법처리에 까지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방식에 대해서 사업주와 구두 계약(시설 53.5%, 일반 46.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별도의 약속이나 계약을 하지 않음(시설 30.4%, 일반 40.4%), 정식서류로 계약(시설 13.5%, 일반 9.2%)의 순으로 응답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미약함을 보여주었다.

□ 대안 및 개선방안

- 청소년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권익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지금까지 인권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 노동자로서의 청소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교육실시 :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업장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전국 혹은 지역사회 단위 내에 있는 사업장 전반에 걸쳐 보편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 청소년에게 노동권 침해시 피해신고 절차, 아르바이트시 지켜야 할 것 등을 교육하고,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청소년들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며 이것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직업 선택시 혜택을 준다.
 -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 : 고용주들이 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시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일과 노동법 등을 교육한다.
-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범국민적인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노동부에서는 청소년고용시 필요한 이력서를 공식화하고 이력서 작성시 노동법규를 읽어볼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한다.